

의 전통한의약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 및 도시계획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지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2의 규정에 의거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문화예술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도시계획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것으로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면, 조세감면이나 융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고 지구내에 비문화업종의 진입이나 영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전통문화행사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혜택이 있음.
- 서울약령시가 문화예술진흥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지구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로서, 동법상 문화지구의 구성요건을 문화시설이나 문화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정하고 있는바, 서울약령시에 소재하는 업종은 대부분 한의약 관련 업소가 주종을 이루며 오히려 문화시설이나 문화유적은 1개소(보재원터)에 불과하여 동지역은 문화지구로써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없음. 또한, 문화예술행사나 축제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역시 문화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바, 동 지역에서 서울약령시 축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이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지구 지정시에는 건축제한이나 영업제한 등 재산권 침해가능성이 있으므로 오히려 청원인들의 주장과는 상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청원인들의 요구사항과는 좀 다르지만, 서울약령시축제를 문화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토록 건의하여 연례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축제를 활성화하고, 한의약 전문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지구 및 「전문상가 단지」로 지정하여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8.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 분회의 부의하기로 함.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1. 의견서 : 첨부

#### 청원요지서

접수번호	6		접수년월일	2002.11. 8
청원인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7-17		
	성 명	박상종 외 830인	주민등록번호	
소개의원	박주웅 의원 (한나라당, 동대문 제3선거구, 운영위원회)			
건명	서울약령시 전통한의약문화보존특별지구지정에 관한 청원			
소관위원회	문화교육위원회			

## 요지

- 서울약령시는 조선초기 왕명에 의해 가난한 병자의 치료를 담당하던 구휼(救恤)기관인 보제원(普濟院)이 있었던 유서 깊은 곳으로 전통한의약의 발전과 재세구민을 위한 선조들의 위업이 서려 있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임.
- 서울약령시는 동대문구 제기동, 용두동 일대의 한의원, 한약방, 한약수출입, 한약도·소매 등 1,000여 업체가 유통, 진료, 투약을 담당하는 특수지역으로 전국 물동량의 70% 이상을 유통시키고 있으며
- 세계인에게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인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의약과 관련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서울약령시지역을 전통한의약문화보존특별지구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지구 지정과 관리 및 육성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바라는 청원

## 청원요지서

접수번호	7		접수년월일	2002.11.15
청원인	주 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16-17		
	성 명	옹상욱	주민등록번호	
소개의원	이현구 의원 (한나라당, 종로 제1선거구, 도시관리위원회)			
건명	도시계획조례 제26조제2항제3호의 개정에 관한 청원			
소관위원회	도시관리위원회			

## 요지

-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26조제2항의3호에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납골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장묘시설에 대한 국민적인 거부감 등 위화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지역에 위치한 사찰이나 교회 등에 납골당과 같은 장묘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사려됨.
- 주거지역내에서 주거와 장묘시설간의 혼용은 사회·문화적 전통양식, 교통·주차문제 등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주거문화여건의 변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주거지역의 취지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므로 이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제26조제2항의 제3호에 대한 개정을 바라는 청원

## 청원요지서

접수번호	8		접수년월일	2002.11.22
청원인	주 소	서울시 중랑구 북동 20 신내 두산아파트 521-205		
	성 명	김우선 외 3,375인	주민등록번호	